|  |  |  |
| --- | --- | --- |
| **환경보호부의 <국가환경기준 관리방법(시범시행)> 공표에 관한 공고**2017년 제14호 공고환경보호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관철하고 국가환경기준 연구•제정•공표•응용•감독 업무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환경기준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첨부 : 국가환경기준 관리방법(시범시행)환경보호부2017년 4월 19일첨부 국가환경기준 관리방법(시범시행)제1장 총칙제1조 환경기준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환경기준의 연구•제정•공표•응용 및 감독 등 업무에 대한 조직과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 받는다.제2조 환경기준이라 함은 인체건강과 생태계에 유해한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요인(오염물질 또는 유해요소)의 사용량 또는 수준을 의미한다.환경요인은 화학적 요인(오염물질, 영양물질 등), 물리적 요인(소음, 진동, 방사능 등) 및 생물적 요인(미생물, 병원체 등) 등을 포함한다.제3조 환경기준 관리 업무는 주로 환경기준에 관한 과학연구, 환경기준업무계획 및 실시계획의 제정, 환경기준의 제정•승인•공표, 관리 플랫폼, 환경기준 전문가 육성, 기술교육, 과학보급 및 응용을 포함한다.제4조 환경기준 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1) 국가의 환경보호 관계 법률•법규•정책 및 관련 규장제도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2) 인체건강 및 생태계 보호에 입각점을 두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기본 국정과 환경 특징에 부합되어야 하며 최신 과학기술 성과를 구현하여야 한다.(3) 참고적 흡수 및 자주적 혁신을 결합한 기초상에서 과학적•규범적, 개방적•공유적, 지속적•질서적으로 환경기준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보호부는 환경기준 업무를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하고 관련 업무규칙을 제정하며 환경기준의 제정 및 공표를 조직한다. 환경보호부는 환경기준에 대한 과학평가를 담당하는 환경기준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로 약칭)를 구성한다.제6조 환경기준 과제 수행업체는 환경기준의 연구 및 제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기준 과제 수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국가의 환경보호 법률•법규를 숙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환경기준 관련 업무 지식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2) 환경기준 관련 과학연구 전개에 필요한 실험•분석 수단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제2장 분류제7조 환경기준은 수질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토양환경기준 및 기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수질환경요인 노출로부터 인체건강 및 수생생태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환경기준을 제정하며 주로 인체건강수질환경기준, 수생생물수질환경기준, 수체영양물질환경기준, 침적물환경기준, 미생물수질환경기준, 병원체수질환경기준 등을 포함한다.대기환경요인 노출로부터 인체건강 및 생태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제정하며 주로 인체건강대기환경기준, 생태계대기환경기준 등을 포함한다.토양환경요인 노출로부터 인체건강, 토양생태계 안전, 농산물 품질 및 지하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양환경기준을 제정하며 주로 인체건강토양환경기준, 육생생물토양환경기준, 농산물품질토양환경기준, 지하수토양환경기준 등을 포함한다.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음, 진동, 방사능 등 환경기준을 제정한다.제8조 환경보호부는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기준 제정에 관한 기술지침 및 규범을 공표하며 주로 적용범위, 기준 데이터 선별, 모형 및 추리방법 등을 포함한다.제9조 환경기준 기술지침 및 규범에 의거하여 각 환경요인의 환경기준을 확정하되 구체적으로 수치, 함수식 또는 기술(記述)수준 형식으로 표현한다. 환경기준의 구체적인 제정 방법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환경기준 공표 시 기술보고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기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환경용인의 성격, 실험 과정, 효과 분석, 노출 분석, 기준 추리 및 서술, 기준에 대한 자기심사, 미(未)사용 데이터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한다.제3장 제정 및 공표제10조 환경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과학성 및 객관성의 원칙. 환경기준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환경 특징과 환경보호의 목표 및 수요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존의 과학연구 결과와 대량의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2) 통일성 및 규범성의 원칙. 환경기준의 제정은 관련 기술지침 및 관리규범에 따라 통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전체 과정에 대한 품질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3) 적시적 갱신의 원칙. 최신 연구성과 및 관리요구에 근거하여 환경기준을 적시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제11조 환경기준의 제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절차에 따라야 한다.(1) 연간 환경기준 업무 계획 작성;(2) 연간 환경기준 업무 과제 및 수행업체 확정;(3) 환경기준 과제 실시방안 제안서 논증;(4) 환경기준 관련 조사, 실험, 추리 및 기안 등 업무 전개;(5) 환경기준 초안에 대한 공개적 의견수렴 및 과학평가 실시;(6) 환경기준에 대한 행정심사 조직;(7) 환경기준 승인 및 공표.제12조 환경기준 초안 작성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목표 환경요인의 국내외 환경기준 연구 및 발표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환경기준 제정 기술을 심도있게 파악한다.(2) 독성 데이터, 인체 및 환경 노출 데이터, 생물학적 확장 데이터, 환경행위 데이터 및 유행병학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목표 환경요인의 국내외 환경기준 관련 데이터를 연구 및 선별한다.(3) 환경기준 관련 조사, 실험, 추리 및 검증을 전개한다.(4) 환경기준 관련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거쳐 환경기준을 제정하고 기술보고서를 작성한다.제13조 환경기준 초안은 공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환경기준 과제 수행업체는 대중의 의견에 근거하여 초안을 수정 및 보완하고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과학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4조 환경기준 과제 수행업체는 과학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분석 및 해석할 의무가 있으며 비교적 큰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기준 과제 수행업체가 수정 및 보완 후 2차 과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15조 과학평가의 주요 기술적 요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환경기준과 우리나라 환경 특징의 적합성;(2) 환기준 제정 방법의 규범성;(3) 환경기준 제정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충분성, 대표성, 정확성 및 신뢰도;(4) 환경기준 제정 과정에서 이뤄진 데이터 분석 및 추리의 정확성.제16조 환경보호부는 환경기준에 대한 행정심사를 실시하고 승인 후 공표한다.제4장 응용 및 감독제17조 환경기준은 환경표준 개정, 환경품질 평가, 환경리스크 평가 등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제18조 국가환경기준데이터베이스 및 관리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환경기준 성과의 공유를 촉진시킨다.제19조 환경기준에 대한 과학보급 및 홍보를 추진하고 기술교육 및 교류를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격려한다.제20조 환경보호부가 환경기준 과제 수행업체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기준 업무 절차와 관련 기술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중단을 명하고 자금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제21조 환경기준전문가위원회는 과학적, 공정적, 객관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환경기준 평가 결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5장 부칙제22조 이 방법은 환경보호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제23조 이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범시행한다. |  | **环境保护部关于发布《国家环境基准管理办法（试行）》的公告**公告 2017年 第14号　　为贯彻《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规范国家环境基准研究、制定、发布、应用与监督工作，我部制定了《国家环境基准管理办法（试行）》，现予发布。该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特此公告。附件：国家环境基准管理办法（试行）　　环境保护部　　2017年4月19日附件 国家环境基准管理办法（试 行）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和规范环境基准管理工作，依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制定本办法。本办法适用于环境基准研究、制定、发布、应用与监督等工作的组织管理。　　第二条 环境基准是环境因子（污染物质或有害要素）对人体健康与生态系统不产生有害效应的剂量或水平。　　环境因子包括化学（污染物、营养物等）、物理（噪声、振动、辐射等）和生物（微生物、病原体等）因子等。　　第三条 环境基准管理工作主要包括环境基准科学研究，环境基准工作规划和实施计划制定，环境基准制定、批准、发布，管理平台，环境基准专业队伍建设、技术培训、科学普及与应用。　　第四条 环境基准管理工作应遵循以下基本原则：　　（一）符合国家环境保护法律、法规、政策以及有关规章制度要求；　　（二）以保护人体健康与生态系统为出发点，符合我国基本国情和环境特征，体现最新的科学技术成果；　　（三）在借鉴吸收与自主创新相结合的基础上，科学规范、开放共享、持续有序地开展环境基准工作。　　第五条 环境保护部对环境基准工作进行统一监督管理，制定相关工作规则，组织制定并发布环境基准。　　环境保护部组建环境基准专家委员会（以下简称专家委员会）负责环境基准的科学评估。　　第六条 环境基准任务承担单位负责环境基准研究与制订等工作。环境基准任务承担单位应具备下列条件：　　（一）具有熟悉国家环境保护法律、法规，掌握国内外环境基准相关业务知识的专业技术人员；　　（二）具有开展环境基准科学研究的实验分析手段和能力。第二章 分 类　　第七条 环境基准可分为水环境基准、大气环境基准、土壤环境基准及其他基准。　　为保护水环境因子暴露下人体健康和水生生态系统安全，制定水环境基准，主要包括人体健康水环境基准、水生生物水环境基准、水体营养物环境基准、沉积物环境基准、微生物水环境基准、病原体水环境基准等。　　为保护大气环境因子暴露下人体健康和生态系统安全，制定大气环境基准，主要包括人体健康大气环境基准、生态系统大气环境基准等。　　为保护土壤环境因子暴露下人体健康、土壤生态系统安全、农产品质量与地下水安全等，制定土壤环境基准，主要包括人体健康土壤环境基准、陆生生物土壤环境基准、农产品质量土壤环境基准、地下水土壤环境基准等。　　为保护人体健康，制定噪声、振动、辐射等环境基准。　　第八条 环境保护部发布水、大气、土壤等环境基准制定技术指南与规范，主要包括适用范围、基准数据筛选、模型和推导方法等。　　第九条 依据环境基准技术指南与规范，确定不同环境因子的环境基准，具体表现形式为数值、函数式或描述水平。为阐述环境基准制定的具体方法和过程，环境基准发布时，需编制技术报告作为附件。技术报告主要内容包括环境因子性质、实验过程、效应分析、暴露分析、基准推导及表述、基准自审核、未使用数据的说明等。第三章 制定与发布　　第十条 环境基准的制定应遵循以下基本原则：　　（一）科学客观。环境基准制定应符合我国环境特征和保护目标需求，以现有科学研究结果和大量的实验数据为基础。　　（二）统一规范。环境基准制定应统一按照相关技术指南与管理规范进行，强化全过程质量控制。　　（三）适时更新。环境基准应根据最新研究成果和管理要求，适时更新。　　第十一条 环境基准的制定应遵循以下基本程序：　　（一）编制环境基准年度工作计划；　　（二）确定年度环境基准工作任务及承担单位；　　（三）对环境基准任务的实施方案进行开题论证；　　（四）开展环境基准相关的调查、实验、推导以及草案起草等工作；　　（五）对环境基准草案进行公开征求意见和科学评估；　　（六）组织环境基准行政审查；　　（七）批准和发布环境基准。　　第十二条 环境基准草案编制工作内容包括：　　（一）调研目标环境因子国内外环境基准研究及发布现状，深入理解相关环境基准制定技术；　　（二）调研与筛选目标环境因子的国内外环境基准相关数据，包括毒性数据、人体与环境暴露数据、生物富集数据、环境行为数据及流行病学数据等；　　（三）开展环境基准相关的调查、实验、推导和校验；　　（四）对环境基准相关数据进行分析评价，制订环境基准并编写技术报告。　　第十三条 环境基准草案应向社会征求意见。环境基准任务承担单位应根据公众意见修改完善草案，并报专家委员会进行科学评估。　　第十四条 环境基准任务承担单位须对科学评估的质疑进行分析与解释，争议较大时，可在环境基准任务承担单位修改完善后进行二次科学评估。　　第十五条 科学评估的主要技术要点包括：　　（一）环境基准与我国环境特征的适配性；　　（二）环境基准制订方法的规范性；　　（三）环境基准制订过程中使用数据的充分性、代表性、准确性和可靠性；　　（四）环境基准制订过程中数据分析和推导的正确性。　　第十六条 环境保护部对环境基准开展行政审查，批准后发布。第四章 应用与监督　　第十七条 环境基准可用于环境标准制修订、环境质量评价、环境风险评估等工作。　　第十八条 建设国家环境基准数据库与管理信息化平台，促进环境基准成果共享。　　第十九条 开展环境基准的科学普及与宣传，加大技术培训与交流，鼓励开展国际合作。　　第二十条 环境保护部负责对环境基准任务承担单位进行监督。对违反环境基准工作程序和相关技术规范的，有权勒令停止，收回资金。　　第二十一条 环境基准专家委员会应本着科学、公正、客观的态度开展工作，对环境基准科学评估结论负责。第五章 附 则　　第二十二条 本办法由环境保护部负责解释。　　第二十三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试行。　 　　 |